

造景植物 및 植栽 關聯 國內·外 法制度에 關한 研究

申益淳* · 金龍洙**

*湖南大學校 造景學科 · **慶北大學校 造景學科

A Study on the Domestic and Foreign Laws connected with Landscape Plant and Planting

Shin, Ick-Soon* · Kim, Yong-Soo**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Honam Universit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Kyung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grasp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name and the related text of the domestic laws(97 statutes, 1 examination, 1 guide, 3 ordinances, 1 leading case) in force which were connected with landscape plant and planting. Examining the general tree-planting system of America, the related foreign laws(1 constitution, 44 statutes, 31 ordinances, 6 leading cases) were arranged in the name and the text and classified by nations of regional groups and it was considered to the mutual relation with lots of laws which are scattered with the various laws.

To examine the points at issue of the related domestic laws and to study the related foreign laws, the remedies for the domestic laws being at issue were proposed.

That is :

A change of the landscape planting concept, the introduction of the landscape planting cost compared with the total construction cost, the unification of the landscape planting ordinances as the unit of city, the clarification of the completion period for the depect of the replaced trees, putting the conservation and production of the top soil under an obligation, the adoption of a licence system for the tree planting within the river area, the introduction of the allotment system for landscape architectural expenses, the encouragement of making a hedge, the settlement for the problems of the trees loss compensation, the necessity for the quality test to the landscape planting works, the

intensification of the punitive rules to the illegal felling and planting of the trees in the greenzone area, the application of the Labor Standard Act to the landscape planting laborers.

The laws relating to landscape plant and planting are prescribed dispersedly in the many other related laws and it is concluded to be impossible for the legislation of the singular law which is applied uniformly to the department of the tree-planting. Hereafter it should be required to analyze concretely in detail the each text of the related laws by means of the joint studies between the professional landscape architects and the lawyers.

I. 序論

1. 研究背景과 目的

무질서로 인한 각종 위협들로부터 시달리고 있는 현대사회는 자연과 인공 요소의 합리적 구성을 목표로 하는 造景的 측면에서의 植物과 植栽 분야에서도 그 실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충돌의 정도를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범인 法の 적용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그 적용은 공공당국이 사법권 하에서 현대인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오고 있다. 인간과 조화되는 자연의 보존을 추구하는 造景植物을 대하는 의식의 점진적 발전과 함께 實定法的 요소 요소에 造景植物과 植栽 관련 내용을 찾아 볼 수 있고, 그 내용은 처음부터 일정한 체계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몹시 산만해져 있는 현실에 당면하고 있다. 이러한 산만의 결과는 국민이 충분한 植栽空間의 受惠를 통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헌법 제 35조 제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의 실현에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제시되어지고 있다.

또한 개인주의나 자연보전에 대한 전통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에서는 기업이윤 추구 과정에서 수반되는 공해와 환경파괴 및 자원고갈 등의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한 후

관련 法規의 정립에 임해야 되리라고 보며, 造景植物의 공급에 따른 체계적 접근방안시 가치 및 기술체제와 아울러 法體系를 준수하며 접근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국내·외 造景植物과 植栽 관련 法規의 현황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造景植物과 植栽 관련 法規들에 대한 상호 관련성을 고찰해 보고, 현행 국내 관련 법제의 문제점을 파악해 본 후, 문제점과 관련성이 있는 외국의 관련 법규정을 살펴 보고자 한다. 마지막 단계로서 국내의 造景植物과 植栽 관련 法規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안해 보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研究史

자연과학자로서의 造景植物과 植栽專門家の 사회과학분야의 법제도에 대한 접근의 거리감으로 인해 국내에서의 造景植物과 植栽 관련 法規에 관한 연구내용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극히 미약한 상태로 판단되며, 특히 관련 법조문 분석과 같은 法理論的 측면의 접근은 전무한 실정이다. 관련 분야의 법조문을 직접 언급한 연구사로는 대한민국 '民法'(제240조: 경계관련 相隣關係(이병태, 1993)중 樹木, 木根의 제거권)과 '立木에 관한法律'(제2조: 立木의 정의, 제5조: 抵當된 立木의 관리)상의 造景樹木에 관한 법조문을 분석한 것(신익순, 1996)과 朝鮮時代 造景制度의 법적 측면에 관한 연

구에서 朝鮮時代 傳統庭園의 造營 및 管理에 關해서 유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經國大典 工典의 栽植 條를 검토하였으나, 本條에서는 生活에 必須的인 樹木의 管理에 關한 規定만을 간단히 언급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힌 것(이유직, 1992)을 들 수 있다.

3. 研究對象과 範圍

(1) 研究對象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의 客體가 되는 대상은 물적 측면에서 광범위한 자연과 인간을 상대로 한 造景植物과 그것과 植栽分野의 계약·계획·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등과 같은 기술적 측면도 포함된다. 法律上의 主對象 用語는 造景植物과 植栽와 關連되는 造景(landscape architecture: softscape, hardscape를 포함), 樹木(tree), 立木, 竹木, 植栽 또는 栽植(planting)-현행 국내 법규의 법조문상 동일 의미를 나타내는 '植栽'와 '栽植'이란 용어가 混用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입법상 용어선택의 미비로 보이며, 향후 사용빈도가 높은 용어인 '植栽'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伐採, 綠化(率) 및 造景面積 등이 되며, 그것과 關連된 국내·외 法規 및 制度, 造景植物과 植栽를 대상으로 하는 法規 關連 學術논문 및 專門서적, 造景植物과 植栽 關連 法規에 대한 專門가 및 法律가들의 意識 등이 그 研究대상이다.

(2) 研究範圍

관련 법제도를 다루게 될 본 연구에서의 '造景植物과 植栽'라는 用語의 對象 限度는 造景的인 측면에서 주로 造景植物(喬木, 灌木 및 地皮植物 등) 및 植栽, 綠化를 그 개념으로 하고 있으며, 수집예정인 造景植物과 植栽 關連 국내·외 법제도의 시간적 범위는 19, 20세기의 현대의 자료가 그 主를 이루고 있으며, 내용적 범위로는 造景植物과 植栽와 關連된 헌법(constitution), 법률(statute), 검토, 지침, 조례(ordinance), 판례(leading case) 및 일반적인 제도(system)이다.

4. 研究方法

(1) 資料蒐集 方法

국내에서 수집가능한 국내·외 造景植物과 植栽 關連 법제에 해당되는 문헌 및 연구자료들을 법원도서관을 비롯한 각종 도서관, 행정관청, 외국대사관 및 關連기업체(현대건설, 쌍용건설 등)들로부터 수집하였으며, 외국으로부터의 자료수집은 해외유학생, 정보센터(21st CENTURY DATA INFO CENTER : 42471 Alpha Place, Temecula, CA 92592, U.S.A.)들로부터의 지원과 해외현지출장, 우편, 전화 및 FAX를 이용하여 해외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각종 자료들은 분석대상 자료의 기준을 설정하여 대상자료의 범위를 결정하였으며, 타분야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자료는 造景植物과 植栽 분야에 특별한 비중이 주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은 한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造景植物과 植栽와 關連된 法條項의 해석이나 해석상의 법전문 용어는 법학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2) 分析方法

국내의 造景植物 및 植栽 關連 법규 현황의 분석대상으로 삼은 법규는 1996년 6월 현재 유효한 모든 법령, 즉 헌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감사원규칙 등을 총망라하여 수록한 '대한민국헌법법령집(전 50권)'(법제처, 1996)을 대상으로 하여 그 현황을 list up 하고, 해외의 관련 법규의 현황 역시 관련 법규명 및 법조항들의 현황을 지역별(영미권, 유럽권, 아시아권)·국가별로 분류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의 관련 법제들의 문제점과 그것들과 關連된 외국의 관련 법제들을 살펴 본 후, 마지막 단계로서 그 결과들을 기준으로 하여 향후 국내의 관련 법제의 개선사항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II. 造景植物 및 植栽 關聯 國內·外 法制度의 現況

1. 國內 法規名 및 關聯 法條項

국내의 造景植物 및 植栽 관련 法規 現황의 분석대상으로 삼은 法規는 ‘대한민국헌법령집(전 50권)’(법제처, 1996)에서 발췌한 造景植物 및 植栽와 相關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97종(총법조문수: 206조문), 검토키 1종, 지침 1종, 조례 3종, 판례 1종 및 經國大典(工典, 栽植條: 朝鮮) 등이며, 그 구체적인 法規名 및 相關 法條項은 Appendix에 나타나 있다.

2. 海外 法制度

(1) 法規名 및 關聯 法條項

수집된 해외의 造景植物 및 植栽 相關 法制度는 헌법 1종,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구성된 實定法 44종, 相關 條例 31종 및 相關 判例 6종 등이며, 그 구체적인 法規名 및 相關 法條項은 Appendix에 나타나 있다.

(2) 地域別·國家別 現況

수집된 해외의 造景植物 및 植栽 相關 법제 도중 지역별·국가별 制度 및 法規名의 現황은 다음과 같다.

1) 英美圈

① 美國

가. 樹木關聯 一般制度

i) 樹木切斷

美國의 공공통행 도로상에서, 싸인판을 더 잘 보이게 할 목적으로 樹木과 주변 植物들을 폐기시킨 데 대한 反발로 대규모 公共抗議運動이 일어 나오고 있다. 수천 건의 樹木절단허가 들이 매년 발생되었고, 불합리하게도 수많은 절단된 樹木들 대신에 연방차원의 기금적립에

의한 造景프로그램하에 새로운 樹木들이 植栽 되고 있다.

FHWA(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연방고속도로행정부)는 주정부에게 연방도로변 의 樹木을 제거할 수 있는 자유재량을 부여했으며, Tennessee州와 같은 일부 州는 州法令에 의해 樹木切斷을 허락하고 있고, 반면에 North Carolina州와 같은 여타 州들은 樹木保護를 위한 ‘植物調節’을 허가하는 법령을 반포했다. 한편 CSB(Coalition for Scenic Beauty: 景觀美聯合)에 소속되어 있는 Iowa, New York 및 Massachusetts 등을 포함하는 29개 州들은 싸인판을 보다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植物을 절단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Richard, 1993).

ii) 地方樹木保護條例

다수의 지방정부들이 공동체 특징으로서의 特殊樹種의 街路樹들을 채택해왔으며, 수목보전조례의 제정 및 세부적인 造景要求事項들을 연구중에 있다.

· 樹木條例에 對한 合法的인 異議 提起

지방수목보전조례와 造景的 요구사항들에 대한 도전적 시도는 거의 없는 편이며, 법정도 사건심리에서 일반적으로 樹木保護를 위한 주정부의 노력에 호의적이었다. 예를 들면 Florida州 법정은 Watson사건(1986)에서 St. Petersburg市의 樹木條例를 지지, 확인하는 판례를 남겼다. 그러나 South Carolina州 법정은 Dunbar사건(1976)에서 Spartansburg市의 부지내 기존 喬木數의 15% 보존을 명기한 지방수목보호 조례를 폐기시켰다.

美國내의 많은 지역에서의 樹木保護에 대한 이의제기와 相關해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법적 문제점은 토지소유자가 건물허가나 부지계획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부지내 樹木을 제거함으로써 각종 제한규정을 피해나가고 있는 것이며, 이를 방지하는 방법의 모색이 당면과제이다. 그러한 방지책을 위해서 일부 공동체들은 ‘허가를 득해야만 하는 개발’의 정의에 樹木除去規定을 포함시키는 모범적 토지개발법전을 따르고 있으며, 간혹 토지정리를 위한 제한요소들을 배수와 토양침식조례들의 일부로서 명

시하는 분리된法規들을 제정하는 지역도 있다.

· 公共用地에서의 樹木

다수의 공동체들은 공공용지, 특히 거리의 도로용지에서의 樹木除去와 剪定을 다루는 법을 제정해왔다. 이 법의 이면에 숨어있는 원리는 공공용지의 보호 뿐만 아니라 신중한 관리를 통하여 본보기로 공공용지를 유지관리해나간다는 것이며, 이 프로그램은 공동체별로 상이하다. 진보적인 예로는 시소유 樹木除去 및 植栽시의 허가필을 요구하고 있는 Cincinnati市, Alexandria市, Ohio州 및 Virginia州的 조례를 들 수 있다.

· 私用地에서의 樹木

다수, 특히 Florida, California 및 Virginia州的 재관관할권은 사유지의 標本樹木을 위한 특별 보호책을 제공하고, 신개발시의 既存樹木 보존을 위한 토지정책작업을 규정하고 있다(Coughlin, 1984). 급속한 개발과 樹木의 불필요한 파괴는 1970년대의 많은 공동체들에게 문제점을 안겨주게 되었고, 그 결과 Fairfax County와 Virginia州로 하여금 美國내에서 가장 포괄적인 樹木保護法規중의 하나를 채택하게 유도했다.

· 樹木條例와 他 設計規定들과의 關係

시의 모든 설계규정들은 樹木計劃을 지원하는 측면에서의 도시설계지표로부터 제정되어야만 하지, 樹木使用을 억제하는 일련의 금지조항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樹木 이외 분야의 설계규정들의 광범위한 목적으로 더 많은 녹음수 사용의 권장, 전체 街路와 오픈스페이스의 형태에 있어서의 단위유형의 발달, 양호한 문화적 植栽行爲의 증진 및 樹木保全과 樹木危害 행위들의 조절 등을 들 수 있다.

美國의 극소수 도시들에서만 위와 같이 植栽行爲를 장려하는 시의 설계규정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 규정들은 '뉴욕시지역지구제조례'에서의 예처럼 신건축물개발을 규정하는 광범위한 조례의 일부분이 되고 있다(Arnold, 1980:144).

iii) 政策的인 障礙要素

다수의 도시 행정당국이 街路樹를 직접 植栽

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공공도로에 인접해 있는 토지소유자들에 의해 植栽된 樹木들을 유지 관리해 오고 있으며, 간혹 새로운 樹木植栽에 관한法規를 적용해 오고 있다. New Jersey州的 법률들은 시당국들에 조직되어 있는 '녹음수위원회(N.J. Federation of Shade Tree Commissions)'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California州의 대부분 시에서 市樹木條例를 채택하고 있지만 街路樹에 관한 마스터플랜은 거의 없는 편이다. 어느 한 조사에 의하면 현재 樹木植栽를 법제화한 조례들이 美國, 특히 남부주에서 넓게 제정되어 적용되어지고 있지만 이러한法規들은 통상 樹木의 種, 樹木이 차지하는 공간 등만을 한정할 뿐 각 街路別 특성을 고려한 명확한 미적 취급방법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않고 있다. 즉 토지소유자에 의한 공공도로내의 새로운 樹木植栽를 금지하는法規들은 상식적으로 볼 때 유지관리상의 문제에 기초를 두고 있다.

植栽計劃은 도시의 기본계획을 준비하는 기관의 설계책임하에 놓여 있고, 공공공간에서 樹木이 차지할 공간은 소화전, 휴지통, 설비관, 맨홀, 방향안내장치, 전쟁기념탑, 비스킷자판기, 지하철입구 및 신문판매대 등이 점유하게 될 공간과의 강한 경쟁력의 결과로 주어지게 되는 실정이며, 언젠가는 우리의 사회적 우선 순위에서 樹木이 기타 시설물들을 앞지르고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리라고 본다. 그 때까지는 樹木을 도시의 요구조항으로 고려할 뿐이지 장식적인 요소로는 인지하지 않게 될 것이며, 이러한 단순한 도시요소의 일부분으로서의 樹木植栽에 관한 정부기관의 금지위주의 규정은 도시설계에 주된 위협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전술한 조례와 같은 유형의 규정들은 미에 대한 고려 없이 樹木專門家들의 이익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표면상의 수익성만을 고려한 조례들은 비록 고의는 아닐지라도 정부의 樹木植栽政策을 손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植栽와 관련된 조례는 樹木分野의 기본계획에 근거를 둔 樹木植栽 프로그램을 수행할 것이 요

구되어지며, 이러한 기본계획 역시 실제의 시 조건들과 관련된 설계기준들을 투명성을 가지고 결정해야만 한다. 樹木計劃들이 地區制計劃이나 交通계획처럼 보편화된다면 보다 더 인간적이고 활기찬 도시건설을 위한 주된 전환점을 창조하게 되는 셈이 될 것이다(Arnold, 1980:121-122).

iv) 特定 樹木의 植栽

사막성 기후에서의 樹木選別시 저수위보존(low water conservation)의 조건에 적합한 樹木을 지정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시의 규정처럼 시 또는 주에서 지정한 특정 樹木만을 植栽하도록 하는 법령이 제정되어, 이것이 그 지역의 특이한 기후 및 토양에 적합한 樹木을 선별하여 植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

나. 관련 法規

관련 法規로서 Site Location Law 1종, 相關 조례인 街路樹條例(California州 리버사이드카운티), 거리상의 주차장시설의 설계기준 조례(California州 리버사이드카운티), 도시 회랑지역지구제(urban corridor zoning plan)조례(Louisiana州 New Orleans市), 싸인판조절(Louisiana州 Lake Charles市), 樹木除去許可(Florida州 St. Petersburg市), 부지내 既存喬木의 보존(South Carolina州 Spartansburg市), 市所有樹木 제거시의 엄격한 규제(Ohio州 Cincinnati市), 공공용지에서의 樹木植栽規定(Virginia州 Alexandria市), 사유지내의 '역사적'이고 '표본적'인 樹木의 市에 의한 지정 및 樹木除去를 위한 허가(Virginia州 Alexandria市), 개발계획시의 樹木保護를 위한 樹木委員會의 감독(Fairfax County와 Virginia州), 시민 식물위원회의 운용(Florida州 Sanibel Island), 산림국, 공원도로국 및 미화국의 樹木植栽基準(Illinois州 Chicago市), 標本市 樹木條例(Kansas州 Kansas市), 樹木栽培 시방 및 실시기준(Georgia州 Atlanta市) 및 뉴욕市 지역지구제조례(New York州 New

York市) 등 15종 및 相關 판례로서 Dunbar v. City of Spartansburg와 Watson v. City of St. Petersburg 2종이 수집되었다.

② 英國

관련 法規로서 Tree Preservation Order(樹木保存規則),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도시및지역계획법), Town and Country Planning Regulation(도시 및지역계획규정), Forestry Act(산림법), Civic Amenities Act(시민쾌적법), Theft Act, Criminal Damage Act, Town and Country Amenities Act(도시및지역쾌적법), Local Government Planning and Land Act(지방정부계획및토지법), Wildlife and Countryside Act(야생전원법), Agricultural Land(Removal of Surface Soil) Act(농업토지법) 및 造景工事BS일반규정 등 12종과 相關 판례인 Marshall v. Green, Mayfair Property Co. v. Johnston, Lemmon v. Webb 및 Barnet London Borough Council v. Eastern Electricity Board 등 4종이 수집되었다.

2) 유럽圈

獨逸에서의 相關 法規인 연방건설법 1종과 相關 조례인 Vlotho市 지역조례, Lüchow-Dannenberg市 지역조례, 뤼벡-알트트리베덴데市 지역조례, Hann市 지역조례, Tübinger市 지역조례, Bad Hersfeld市 지역조례 및 Marl-Bassert市 지역조례 등 7종이 수집되었다.

3) 아시아圈

① 日本

관련 法規인 立木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학 교시설표준, 묘지계획표준, 도시미관풍치를 유지하기 위한 樹木의 보전에 관한 법률, 하천부지점용 허가준칙, 도시녹화대책추진요강, 도도부현의 녹화추진사업, 市街地の 녹화추진사업, 개발행

위허가를 충족시키는 적정 조건에 通達,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운영 通達,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운영 세칙 通達, 녹지보전지구내의 토지평가 通達, 문화재보호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도시미관 풍치유지를 위한 樹木保存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포함), 대기정화 植栽지침,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도시계획법, 민간사업자 능력의 활용에의 한 특정 시설 정비 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 및 토지수용법 등 21종과 관련 조례인 古都滋賀縣 풍경유지관리조례(滋賀縣), 근린경관형성협정(滋賀縣), 高槻市 녹지환경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高槻市), 東京의 자연보호와 회복에 관한 조례규칙(東京都), 喬木과 灌木의 구별기준(兵古縣), 喬木과 灌木의 구별기준(川崎縣), 보조금과 부요강조례규칙 및 古都滋賀縣 풍경유지관리조례에 의한 대규모 건물·공작물의 제출(届出)과 지도기준조례(滋賀縣) 등 8종이 수집되었다.

② 中國, 싱가포르 및 北韓

中國의 경우 秦律·田律(中, 秦)과 중화인민공화국형법 2종의 관련 法規와 관련 조례인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조례 1종 및 중화인민공화국헌법 1종, 싱가포르의 경우 The planting and landscaping requirements for development projects(개발프로젝트시의 樹木植栽 및 造景요구사항)와 Parks and Tree Act(공원·樹木法) 2종의 관련 法規 및 北韓의 환경보호법과 도시경영법 2종의 관련 法規 등이 수집되었다.

Ⅲ. 造景植物 및 植栽 關聯 國內 法規의 問題點

造景植物 및 植栽 관련 현행 국내법규중의 문제점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해당 法規의 구체적인 범조문 내용은 생략하였으며, 범조문 형식의 표시기호로서 §는 조, ()는 항, ○는 호, []는 목, #는 별표, @는 별지를 의미한다.

1. 새로운 樹木 植栽爲主의 植栽概念

垡地 안의 造景을 위한 造景植樹의 대상 (§27(1))과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造景植樹의 완화 (§111(3))를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공장용지안의 造景義務의 완화를 명시하고 있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26(1)(2)), 공동주택건설시의 造景面積 확보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9(1)),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안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의 垡地 안의 造景은 垡地面積의 20%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4의3(1)③[라]) 및 垡地 안의 造景을 위한 造景面積의 기준과 造景面積 산정기준의 완화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조례(1996)' (§17(1)(2)) 등의 규정과 같이 현행 국내의 수목식재규정은 대상지를 완전히 부지정리한 후 기존 樹木이 전연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樹木을 식재하는 개념이며, 기존 樹木의 보존을 규정하는 법규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2. 量的 綠化 爲主의 造景植栽 義務規定

대지안의 造景을 위한 造景植樹의 대상(건축법시행령: §27)에 따른 대지안의 造景을 위한 造景面積의 기준과 植栽 등 造景基準을 명시한 '서울특별시자치구조례' (§17, §18)에서 건축물 연면적별 대지면적에 대한 造景面積의 비율을 명시함으로써 일정면적의 造景植栽義務와 해당 구역의 植栽基準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적 규제에만 연연하여 植栽密度, 교목과 관목의 비율, 상록수와 낙엽수의 비율 및 樹木規模 등의 배치에서 일률적이고 불합리한 植栽計劃이 실시되고 있는 바 계획가에 의한 참신한 아이디어의 실현화 의도를 가로막고 있다. 그 일례로 작품성 있는 造景 植栽디자인을 의도하여 큰 규격의 樹木을 植栽하였을 경우, m²당 0.1~0.3본의 樹木을 植栽할 공간이 부족하여 법적 植栽密度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서 결국은 계획가에 의한 자유로운 디자인이 포기되어지고 만다.

3. 區廳別로 相異한 植栽基準 條例

현행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에서의 대지안의 植樹基準을 명시하고 있는 植栽 관련 조례는 구청별로 상이하게 제정되어 있음으로써 식재지 수목환경의 특성과는 관계없이 행정구역상의 경계에 따라 그 기준을 규제하고 있을 뿐이다.

4. 樹木瑕疵期間上의 問題點

하자보수내용중 樹木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인 2년내(공동주택관리규칙 별표3)의 枯死로 인한 樹木의 교체시, 하자기간 완료시점에만 생육상태로 보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不良樹木을 사용하는 것이 현재 사실상 가능한 실정이다. 일반적인 하자보수 책임기간외에 교체된 樹木의 하자완료기간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정도 필요하다.

5. 表土(top soil) 保存 規定의 未備

표토활용 및 보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국내법은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表土 활용대책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공문서분류번호(67635)를 명시하고 있는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 (§3)만이 존재하고 있다.

6. 河川區域內 喬木植栽 禁止條項의 不合理

하천구역안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植栽行爲를 할 수 있는 植物은 잔디, 1年生 植物, 성목의 평균높이가 1m 미만인 多年生 樹木의 묘목 및 화훼류로 한정되고 있으며(하천법:§25(1)⑧, 동법시행령:§19의2), 하천구역의 범위에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에 해당하는 하천관리에 필요한 제방을 포함시킴으로써(하천법:§2(1)②③) 현행 법규상 堤外地의 제방사면에 수고 1m 이상의 樹木을 植栽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7. 植物生育 不適地에 대한 造景義務

현행 국내법상의 조경식재의무 규정은 상업지역의 소규모 건축물등에서 그 造景面積이나 위치, 기후 등으로 인해 植物生育이 열악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도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법정 造景義務를 부여함으로써 합리적인 조경설계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8. 立木에 대한 損失補償의 問題點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시 토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樹木에 대한 보상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4호의 규정에 따라 ‘立木에관한법률’에 의한 立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3호에서의 ‘토지등’에 포함되는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재산’에 해당되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제2조2항2호의 立木 및 그 立木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토지등’에 해당되며, ‘동특례법’ 제4조2항3호의 규정에 따라 그 立木에 대하여는 거래가격·원가·수익성등을 참작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하게 되어 있다. 본 규정에 따라 예상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立木의 登記

‘立木에관한법률’ 제2조1항에 의하면 ‘立木’이란 토지에 부착된 樹木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의 登記를 받은 것을 말하므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필히 대지상의 樹木을 登記를 하여야 하는데 토지수용 당시 법에 무감각하여 登記 없이 樹木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 樹木에 대한 손실보상이 원천적으로 봉쇄할 우려가 있다.

(2) 支障物處理化의 可能性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조2호의 규정에 따라 공공사업용지내의 토지에 정착한 立竹木중에서 당해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立竹木은 본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支障物’에 해당되게 됨으로써 손실보상 대상으로서의 ‘토지등’의 일종인 ‘立木’보다 그 손실보상액이 낮게 책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용기관과 樹木所有者간의 법적 분쟁화의 소지가 있다.

(3) 移植不適期の 移植에 따른 紛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3, 5항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인한 보상계획을 정함에 있어 그 보상대상이 立木인 경우의 그 移植時期는 移植不適期로서 枯損率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시기를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 보상액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 수용기관에 의한 移植不適期에의 移植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책이 법규화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현실적으로 樹木所有者와 토지수용기관과의 법적 분쟁화의 소지가 있다.

9. 造景植栽工事의 品質試驗 除外의 不合理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0조(품질시험의 종류)에서 명시하고 있는 건설공사에 사용될 재료의 선정을 위한 선정시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관리시험 및 품질확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시험 등의 품질시험은 造景植栽工事に도 분명히 해당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품질시험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서 ‘造景植栽工事’는 품질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임을 밝히고 있는 것은 토양과 樹木이라는 생물재료를 다루고 있는 植栽工事 품질의 중요성을 경시한 처사이다.

10. 綠地안에서의 竹木의 不法 伐採·栽植 등의 行爲에 대한 罰則의 微弱

‘도시공원법’ 벌칙규정(§33②)으로서 綠地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綠地안에서 竹木의 伐採 및 栽植을 행한 자에 대한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은 동일 조건하에서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에 대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동법§32②)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너무 낮게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도 벌칙으로의 효과가 미흡하다.

11. 植栽工事 勤勞者에 대한 勤勞基準法 適用의 排除

植物의 栽植, 재배 및 채취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적용의 배제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9조1호의 규정은 특별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IV. 造景植物 및 植栽 關聯 外國 法制度의 分析

造景植物 및 植栽 관련 외국법제도중 국내법제도의 문제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규들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해당 法規의 구체적인 법조문 내용은 생략하였으며, 법조문 형식의 표시기호로서 §는 조, ()는 항, ○는 호를 의미한다.

1. 既存 樹木 保存爲主의 植栽概念

녹지조성과 복원을 위한 도시공원의 정비시 주구기간공원 및 도시기간공원, 완충녹지 및 녹도, 도시녹지, 묘원 등의 녹화면적률을 명시하고 있는 日本의 ‘도시녹화대책추진요강’(Ⅲ, -), 도시주택의 녹화율과 도시학교의 녹화율을 규정한 日本의 ‘도도부현의녹화추진사업’(1.2)

과 市街地住宅의 녹화율과 市街地學校의 녹화율을 규정한 日本의 ‘市街地の 녹화추진사업’(1.2) 및 주차장녹지의 녹화율(15~20%)을 규정하고 있는 日本의 ‘보조금교부요강조례규칙’ 등의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의 식재개념에서도 국내와 유사하게 대상지에 대한 새로운 수목식재를 위주로 하고 있지만, 개발대상부지내의 기존 喬木數의 15%를 보존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美國 South Calonia州 Spartansburg 市の ‘부지내기존喬木의 보존조례’, 부지정리기간동안의 樹木廢棄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개발계획시의 기존 樹木의 보존을 기본 개념으로 삼고 있는 美國 Florida州 Sanibel Island의 ‘市民植物委員會의 운용조례’, 기존의 지역경관을 형성하는 樹木들의 보존과 절대적으로 보존되어야 할 樹木의 별도지정을 규정하고 있는 獨逸의 ‘Vlotho市지역조례’ (§3.7), 垜地의 도로 측면과 垜地 위의 樹木은 본래대로 보존하거나 이와 동등한 수준의 이상인 樹木으로 代替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獨逸의 ‘뤼벡-알트트리베뎀데市지역조례’ (§11.6/4), 마당으로 이용되지 않는 미건축용지는 공공교통공간이 보이는 정원으로 조성되어 관리되어야 하며, 특히 공공교통공간에서 보이는 기존의 樹木은 보존되어야 하고, 滅失의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植物로 代替 植栽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獨逸의 ‘Tübingen市지역조례’ (§6.4), 기존의 樹木은 보존되어야 하지만 운하나 街路의 築造에 방해가 되는 樹木, 심한 그늘을 만들고 주거공간의 일조를 저해하는 樹木 및 병들거나 불구성인 樹木은 제거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獨逸의 ‘Marl-Bassert市지역조례’ (§5.2.6) 등과 같이 서양 각국의 경우에는 새로운 樹木의 식재보다 기존 樹木의 보존을 위주로 한 식재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2. 表土(top soil) 活用 및 保存에 관한 法規

건축물의 건설 내지 변경의 경우, 또는 지표층을 본질적으로 다른 물건으로 변경할 경우 지층토양은 이용가능한 상태로 보존하고 또 소멸되

기 이전에 보호되도록 규정함으로써 표토 보존을 의무화하고 있는 독일의 ‘연방건설법’ (§39), 판매를 위한 농업용 표토의 제거시 비승인된 업체가 담당했을 경우, 범죄행위로 취급되어지는 개발형식으로 구별되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영국의 ‘Agricultural Land(Removal of Surface Soil) Act(농업토지법)’, 표토(top soil)의 정의, 표토조사 및 기록, 표토평설, 저장표토의 사용 및 표토의 정지작업 등을 규정하고 있는 영국의 ‘조경공사BS일반규정’ (British Standard 4428, sec.1,2,4), 지역삼림계획시 기능향상을 위한 삼림보전책으로서 표토의 보존에 특히 유의할 만한 시설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日本의 ‘開發行為許可基準의 運營通達’ (第二(1)) 및 개발허가의 기준으로서 식물생육상 필요한 표토의 보존을 명시하고 있는 日本의 ‘都市計画法’ (§33(1)⑨)과 표토보존을 위한 기술적 세목을 상술하고 있는 ‘同法施行令’ (§28의 2②) 등의 관련 법규와 관련 조례인 식재계획에 나타난 모든 화단(planter)의 토양표면(top soil)은 적절한 토양재료로 살포되어지거나 회복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 California 주 리버사이드카운티의 ‘거리상주차장시설(off-street parking facilities)의 설계기준조례’ (Land use ordinance No.348)가 있다.

3. 河川區域內 喬木植栽 禁止條項

日本의 ‘河川敷地占用許可準則’(1965) 第五1(식물점용허가 방법의 기준)에서는 하천부지내에서의 식물점용허가가 가능한 기준은 식물높이가 1m 이하여만 하고, 竹木類는 群生이 아니어야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生울타리造成

개발시의 생울타리의 장려를 규정하고 있는 日本 高槻市の ‘高槻市綠地環境保全및綠化推進에 관한條例’와 구조물 담장 대신 樹木을 이용한 생울타리조성의 의무화와 이 경우의 공사비 보조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보장하고 있는 ‘綠

化協定'(都市綠地保全法(日:1973):§14~§20)을 통하여 생물다양성조성을 장려하고 있다.

V. 造景植物 및 植栽 關聯 國內 法制度 改善을 위한 提案

造景植物 및 植栽 關聯 現行 國內법규중의 문제점에 대하여 외국의 關聯 법규들을 기준으로 하거나 자체적으로 제안해 본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植栽概念의 轉換

개발대상지의 식재개념은 국내에서와 같은 새로운 樹木의 식재위주와 해외에서의 예와 같은 기존 樹木의 보존위주의 2가지로 대별된다고 볼 수 있다. 해외의 경우 새로운 樹木의 식재는 건축주의 자발적인 의사에 맡겨도 그들 스스로가 쾌적한 樹木環境造成을 위해 능동적으로 충분한 식재를 시행하는 습성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대상부지내의 기존 樹木중 일정량만을 법적으로 보존하도록 명시해도 합리적인 식재계획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국내의 경우는 건축주에 의한 자발적인 식재를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개발부지는 시공 전 일단 깨끗이 밀어버리려는 의식과 법적 규제만을 피해나가면서 경제적인 시공만을 노리고 있는 실정이므로 법적인 식재의무규정이 아직까지는 필요하다. 선진화에 따른 주거외부환경의 향상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추세이므로 식재개념의 전환에 따른 법규정의 수정도 고려해야 되리라 예측된다. 아 물론 당분간은 두 개념의 완충개념으로서 부지내 기존 樹木의 보존에 관한 법규정과 현행 식재의무규정을 병립해서 수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全體工事費 對比 一定金額의 植栽費用制度의 導入

'양적 녹화'에서 '질적 녹화'로의 전환개념에 의하여 현행 造景面積에 근거한 植栽義務條

項 대신 식재설계가들에 의한 개성창출을 가능케 하는 전체공사비 대비 일정금액(하한선)의 植栽費用으로의 분담과 같은 제도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3. 植栽基準의 市單位 條例로의 單一化

현행 植栽基準 關聯 條例가 구청별로 상이하게 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造景面積, 植栽密度 및 규격 등의 기준은 건축물의 주변환경과 관련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해서 그 기준이 달리 규정되고 있는 점은 설득력이 없으며, 설계·시공자의 입장에서 볼 때 혼선만 초래되므로 市條例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4. 交替된 樹木의 瑕疵完了期間 明示

수목식재와 관련된 일반적인 하자보수 책임기간(2년)외에 의도적인 不良樹木으로 교체된 樹木의 하자완료기간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5. 表土(top soil) 保存 및 造成의 義務化

일정 규모 이상의 표고 변경을 수반하는 조경식재공사에 있어서 사업승인시에 표토보존계획을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토록 하는 규정과 표토판매업과 관련된 제반규정들을 국내의 관계법규들에 분산하여 포함시키거나 단일법인 '표토보존법(가칭)'을 제정하여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자연지반 대상일 경우 瘠地 조성공사 중에 植栽地(예정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이 부분을 일반의 지반조성수법과는 별도 방법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植栽基盤造成工事を 독립시켜서 생각하는 것이고 종래의 단순한 소규모적인 토양개량과는 다르며(이대성, 1982), 植栽地 표토조성의 특별 법제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6. 河川區域內 喬木植栽 許可制 採擇

提外地의 제방사면에서의 수고 1m 이상의 樹木 植栽 禁지를 명시하고 있는 현행 법규정(하천법:§25(1)⑧, 동법시행령:§19의2)의 주목적은 홍수시 유실된 樹木이 표류중 교량의 교각을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현대의 교량설계는 여유강도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 현 법 적용시 제방상단에서의 가로등용 철재기둥은 허가하면서 본 법조항에 따라 그 보다 약한 강도인 喬木植栽를 금지한다는 것은 설득력상 문제점이 있으며, 동일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日本의 '河川敷地占用許可準則'(1965)의 第五1(식물점용 허가 방법의 기준)의 규정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오해의 여지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법조문의 타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욱이 홍수빈도와 제방 표고의 상관성에 따른 연차적인 樹高의 제한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喬木植栽를 금지시킴으로써 생태계 자연천이에 의한 제방사면녹화와 식생경관처리를 막고 있는 현 실정법 규정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금지제에서 허가제로의 법개정이 절실하다고 본다.

7. 造景負擔金制度의 導入

植物生育 환경이 부적절한 곳에는 법정 造景義務를 면제시키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造景負擔金으로 납부하여 그 지역전체의 녹화기금으로 활용하는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8. 生울타리造成 獎勵

국내 법규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생울타리조성을 법제화하고 있는 외국의 예처럼 국내의 植栽 관련 법규에서도 본 규정을 도입하여 도로경관 뿐만 아니라 도시전체경관의 미적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고 본다.

9. 立木에 대한 損失補償의 問題點에 대한 解決策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시 입목 미등기로 인한 손실보상제외의 피해를 면하기 위해서 토지수용공고시 登記를 정리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부여하는 법조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입죽목을 대상으로 토지수용기관에 의해서 낮은 손실보상액을 산출케 하는 임의적인 지장물처리화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보상액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 수용기관에 의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시행을 이유로 한 移植不適期에의 移植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책이 법규화되어야겠다.

10. 造景植栽工事의 品質試驗 施行의 必要性

품질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의 종류에 '조경식재공사'를 포함시키고 있는 '건설공시품질시험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은 조경식재공사의 특성을 무시한 불합리한 조항으로 판단되므로 조경식재공사의 식물재료 및 식재유지관리시험을 위한 특별 전문대행자를 조건으로 하는 조경식재공사의 품질시험을 법제화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판단된다.

11. 綠地안에서의 竹木의 不法 伐採·栽植 등의 行爲에 대한 罰則強化의 必要性

현행 '도시공원법' 제33조2호의 綠地안에서의 竹木의 불법 伐採·栽植 등의 행위에 대한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은 타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보다 강한 벌칙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12. 植栽工事 勤勞者에 대한 勤勞基準法 適用의 法制化

현행 법규(근로기준법:§49①)에 의해 배제되어 있는 造景植栽工事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적용쪽으로 법제화시켜야 된다고 본다.

13. 其他 提案事項

花卉 및 樹木의 생산·유통 과정상의 법정 제도화와 樹木生産豫告制의 법제화가 요구되고 있다.

VI. 結論

造景植物 및 植栽를 造景的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법률은 여러 관련 法規에 分散되어 규정되어 있고, 일률적인 적용을 위한 單·法의 제정은 불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파악해 본 國內의 관련 法規現況은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이 97종(총법조문수: 206조문), 검토 1종, 지침 1종, 조례 3종 및 판례 1종이었으며, 外國의 경우는 수집된 관련 法規인 헌법 1종, 법률 44종, 조례 31종 및 판례 6종을 대상으로 지역별·국가별로 그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國內의 관련 법제들의 문제점과 그것들과 관련된 外國의 관련 법제들을 살펴 본 후, 그 결과들을 기준으로 하여 향후 國內의 관련 법제의 개선사항으로서 植栽概念의 전환, 전체 공사비 대비 일정금액의 植栽費用制度의 도입, 植栽基準의 시단위 조례로의 단일화, 교체된 樹木의 하자완료기간 명시, 表土(top soil) 보존 및 조성의 의무화, 하천구역내 喬木植栽 허가제 채택, 조경부담금제도의 도입, 생울타리 조성 장려, 立木에 대한 손실보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造景植栽工事의 품질시험 시행의 필요성, 綠地안에서의 竹木의 불법 伐採·栽植 등의 행위에 대한 벌칙강화의 필요성 및 植栽工事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의 법제화 등의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연구 전반에 걸쳐 自然科學者에 의한 法과 관련된 社會的 접근방법의 어려움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通時的이고 형식적인 면에 치우친 듯한 면을 실감할 수 있었으며, 향후 造景植物 및 植栽 관련 전공자와 法律 전공자(lawyer)에 의한 合同研究를 통하여 관련 법제의 정비

를 위한 法條文 簡箇에 따른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가 그 준비단계와 참고자료로서의 역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參考文獻

1. 광윤식(1993), 『채권각론』, 서울: 박영사.
2. 권오준 외(1995), 『환경설계관계법규』, 고양: 동별당.
3. 김완복(1994), 『도시조경관광법규집』, 서울: 법진공사.
4. 법제처 편찬(1996.6.29), 『대한민국헌법령집(전50권: 제72회 追錄)』,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5. 신익순(1996), "造景과 관련된 民法상의 내용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논문집』, 17(2): 597, 598.
6. 오휘영(1983), "造景에 관한 制度 및 法規", 『한국조경학회지』, 11(2).
7. 이대성(1982), "造景工事의 實施에 관한 연구(植栽工事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6.
8. 이병태(1993), 『신법률용어사전』, 서울: 법문출판사: 281.
9. 이유택(1992), "조선시대 造景制度의 법적 측면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0(2): 85, 86.
10. 조상원(1993), 『小法典』, 서울: 협암사.
11. 都市計画法制研究會(1991), 『都市計画法令要覽』, 東京都: (株)ぎょうせい.
12. 西村保(1987), "高機市綠地環境の保全及び綠化の推進に關する條例について", 『環境情報科學』 16(3): 44-48.
13. Arnold Henry F.(1980), Trees in urban design,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14. Coughlin, R. et al.(1984), "Private trees and public interest programs for protecting and planning trees in metropolitan areas", Department of City and Regional Planning, University of Pennsylvania, Research Report No.10.
15. David L. Callies et al.(1994), Cases and materials on land use, St. Paul, Minnesota: West Publishing Co..
16. Donald G. Hagmam, Julian Conrad Juergensmeyer(1986), Urban planning and land development control law(second edition), St. Paul, Minnesota: West publishing Co..
17. Edward J. Kaiser et al.(1995), Urban land use planning, Urbana and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8. Gail W. Jesswein(1994), Contractors license law and reference book, California 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

19. James Acret(1995). California construction law manual(contractor's edition 1995). Colorado : McGraw-Hill, Inc. .

20. J.D.C. Harte(1985). Landscape, land use and the law -An introduction to the law relating to the landscape and its use- , London : E. & F.N. Spon Ltd. .

21. Kelleann Foster(1995). Activating Ordinances. Landscape architecture, ASI.A(October).

22. Richard C. Smardon and James P. Karp(1993). The legal landscape, New York :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 87.

23. Robert R. Wright(1994). Land use, St. Paul, MN. : West Publishing Co. .

24. The county of riverside(1993). Regulating the division of land, California, U.S.A. : Ordinance No.457.75.

①. \$46(1)①[아][하]. B : \$7의3(4). \$7의4. #1⑩. \$9(7)⑥ 제16호서식. \$13의2. #4③. \$19⑥ 제28호서식⑥/소하천정비법 : \$14(1)⑥/골재채취법 : \$47(1.3)/도로법 : \$3(1)②. \$47②. \$48(1). \$49. \$50(3)(4)(6). \$51(3). A : \$1의3⑨. \$24(5)⑩. \$26의2(1)#2. \$27(3)⑩(4)⑥. \$28/수도권신공향건설촉진법 : \$9(1). A : \$6(1)③/전기통신사업법 : \$42(2)(3)/문화재보호법 : \$2(1)③. A : \$43(2)①[아]/전통사찰보존법 : \$6(1)③. A : \$3(1)④/고속국도법 : \$5(2)/철도법 : \$76(1)③/도로유지·보수령 : \$8(1)#2(2)(3)/도로표지규칙 : \$12(2)/소음진동규제법 : \$42의2(1). B : \$3#2①②/토양환경보전법 : \$8(1). A : \$13④/수질환경보전법 : \$10(3)/폐기물관리법 : \$50(1)/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 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 : \$12(1). A : \$9(1)①/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 \$6(1)/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 \$9②⑥/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 \$5(1)①/관광진흥법 : \$29(1)②. \$36③. A : \$4의3(1)③[라]. \$31(1)(2). B : \$28⑥ 제25서식/제주도개발특별법 : \$20(3). \$21(2)⑤. A : \$11⑤/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25(1). A : \$14(1)①/화학유해물질법 : \$28의4(1)/유동단지개발촉진법 : \$18(1)/항공법 : \$97(1). A : \$10②[바]. \$26(1)③. \$38(1)④/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 \$4①[다]②[다]. \$5(2)①[가]. \$8②/수도법 : \$5(4)②. \$45(1). A : \$9(1)④. \$9의2②/하수도법 : \$23(1)/지하수법 : \$18(1)(3)/한국수자원공사법 : \$34/공유수면관리법 : \$4(1)⑤/특정다목적댐법 : \$5의3(3)③. B : \$1의2③/풍수해대책법시행령 : \$23(1)/산림법 : \$75(1)⑧. \$90(1). A : \$2③. \$3③. B : \$9의8(1)⑤. \$51(1)③. \$86(1)⑧. \$94(1)④. \$104③/청소년기본법 : \$44①. A : \$50⑦/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 \$3#2①[라]/근로기준법 : \$49①/조수보호및수업에관한법률 : \$4(4). B : \$7(2)/사방사업법 : \$2②③. \$14(1)/농지법시행령 : \$2(1)③/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 \$1/농어촌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 \$10(3)/농어촌도로정비법 : \$3②[나]. A : \$3⑧/광산보안법시행규칙 : \$154/측량법 : \$11(1)(2). \$12. \$13(1)/전기사업법 : \$55(1)(2)②(3). \$58(1)/도시가스사업법 : \$36(1)(2). \$37/수산업법 : \$65. \$83/어항법 : \$21(1)(2). \$22. \$23(1)/항만법 : \$45(1)(2). \$46. A : \$18(1)④/開港秩序法 : \$24(1)③/수로업무법 : \$12(1)(2). \$13. \$15(1)/항로표지법 : \$11(1)(2)(3). \$14(2)/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23(1)/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 \$15(1)①/학교시설사업촉진법 : \$8(1). \$9(1)/초지법 : \$5의2(2)(5). \$8③/소규모지역사업및보육서비스사업의계약에관한사무처리규칙 : \$29(1)②/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 \$64(2)#16/서울대학교설치령 : \$6(3)②/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 \$9(2)④/국립묘지령시행규칙 : \$16①/군사시설보호법 : \$10⑥/군용항공기법 : \$8(1)(2). \$10. \$16①/군용전기통신법 : \$8(1)/외자도입법 : \$2⑦/관세법 : \$7(1)#제2부제6류/법인세법시행규칙 : \$18(3)⑩[마]16호[가]/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 \$21(2). B : \$8/지가공시및토지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 \$2④/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 : \$2①. \$4(2)③. A : \$2의10(3)(6). B : \$2②. \$5의3(5)②. \$6(5). \$15(1). \$16. \$23의2/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 : \$3별책/경범죄처벌법 : \$1. 20호/經國大典(乙巳大典). 1典(朝鮮) 成宗16年. 1485) : 裁植條/환경정화수의검토(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요령집 : 1994. 7)/서울시본정

Appendix. The list of the domestic and foreign laws connected with landscape plant and planting

*註 : 1. A : 동법시행령, B : 동법시행규칙, \$: 조, () : 항, ○ : 호, [] : 목, # : 별표, ⑥ : 별지
 2. A, B : 法規數 산정대상에서 제외
 3. 日本의 法規體系중 '通達' 은 韓國의 '施行令' 에 해당함.

1. Domestic laws(97 statutes, 1 examination, 1 guide, 3 ordinances, 1 leading case)

立木에관한법률 : \$2(1)(2). \$5(1). \$15②. A : \$1. \$7/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기준등에관한규칙 : \$2②. \$3(1)①③. \$17(2)/국토이용관리법 : \$4(1)(3). \$15(1)⑥[나]. B : \$9/民法 : \$240(1)(2)(3). \$758(2)/건축법시행령 : \$27(1). \$111(3)/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 \$26(1)(2)/주택건설촉진법 : \$32의2(1)/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 \$9(1)(3). \$10(2). \$29(1)(3). \$50(4)/공동주택관리규칙 : \$11. #3/택지개발촉진법 : \$10. A : \$6(1)③(5)①/건설기술관리법 : \$38의9(2). A : \$40. B : \$15/건설업법시행령 : \$31의2①/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70. #1/도시공원법 : \$33②. B : \$6(2)/토지구획정리사업법 : \$36(1). \$37(1)/토지수용법 : \$2(2)②/도시계획법 : \$4(1)①. \$5(1). \$6(1). \$20의2(4)②. A : \$5(1)①②⑤⑥. B : \$7(3)④. \$8②⑦/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 \$10(3). \$97(2)①. \$99②. \$121④/도시계획의작성기준에관한규정 : \$3(2)/자연환경보전법 : \$3⑩. \$14(1). \$23(1)③⑦⑧. \$31. A : \$22①/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 \$11②/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 : \$11#②/하천법 : \$2(1)②③. \$25(1)⑧. \$43. \$45(1)②. A : \$18의2(1)#3③⑧. \$19의2. \$34(2)

